

평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평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1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11. 6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지방세 정기분 과세건에 대하여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신청자 또는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방식의 납부신청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성실납부의 의무를 독려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1) [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]

「지방세기본법」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.

2) 정기분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항 마련

기 준	개 정 안
(신설)	<p>①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」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150원 2.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300원 <p>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.</p> <p>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.</p>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관계부서승인 : 해당없음

라. 입법예고 : 2011. 03. 11 ~ 03. 31(21일간), 제출의견 없음

마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평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2(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각 호와 같다.

1. 자동계좌이체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150원
2.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300원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11.6.1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제15조의2(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자동계좌이체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150원 2.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300원

관계법령(지방세특례제한법)

제92조의2(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 ①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(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)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.

1.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
2.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

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 금액을 한도로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.